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7. 10. 평창군수(지역개발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8. 6.
- 다. 상정일자 : 1998. 8. 12. 제5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가. 읍·면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중 목욕탕사용료가 '91년 1월 1일 제정된 이래 금액 조정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나. 그동안 계속적인 유가 인상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함.

3. 주 요 내 용

- 가. 복지회관시설 사용료 기준을 일반인은 현행 800원에서 1,500원으로, 학생은 현행 6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임.

4. 검 토 의 견

- 본 조례안은 관내의 복지회관(계촌, 봉평)의 적자가 누적되어 목욕탕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반영하여 인상폭을 낮게 해야 주민의 마찰 저항을 극소화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내 복지회관별 '97년도 목욕탕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 관 별	사용자수	사용료징수액	목욕탕유지비	비 고
계	15,186	11,624	13,838	
계촌복지회관	963	651	2,640	11월~4월까지만 사용(장날)
봉평복지회관	14,223	10,973	11,198	9월~6월까지만 사용(주2회)

○ 시군 복지회관별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명	사 용 료			비 고
	어 른	학 생	어린이	
원주시	1,500	1,000	400	○ 어른 : 만19세 이상인자 ○ 학생 : 중·고등학교 학생과 13~18세 인자 ○ 어린이 : 초등학교생
홍천군	800	600	400	
횡성군	2,000	1,500	1,000	
평창군	1,500	1,000	500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평창군의 계촌·봉평복지회관의 적자액은 연간 2,21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 사용료는 횡성군이 가장 높고 홍천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홍천군의 경우, 사용료 기준액이 91년 책정 이후 지금까지 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금번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목욕료의 인상은 IMF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현행 일반목욕탕의 목욕료가 일반인(중·고등학생 포함) 2,700원, 어린이 1,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이와 대비하여 불때는 개정 인상하는 내용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